

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74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2022. 11. .

제 출 자 평 창 군 수

□ 제안이유
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 제1항에 따라 「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」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 받고자 함.

□ 관련근거

- 지방자치법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
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(대상사무)
-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(위탁운영)

□ 위탁운영 목적

-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공예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을 갖추고 지역 주민에게 참여 기회를 확대 운영 할 수 있는 전문민간시설에 운영 관리를 위탁하고자 함.

□ 시설현황

- 시 설 명 :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
- 위 치 : 평창군 진부면 상진부리 1306-3번지 일원

- 주요시설(건물 1동)
 - 1층 : 교육 및 전시·체험실 390.3m²
 - 2층 : 교육실 151m²

□ 위탁개요

- 위탁자 : 평창군
- 위탁방법 : 공개모집,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위탁 심사 후 결정
- 수탁자 :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에 의거 자격을 갖춘 자
- 위탁기간 : 2023. 1. 1. ~ 2025. 12. 31. (3년간)
- 위탁내용
 - 공예품 전시 및 판매에 관한 사항
 - 공예 관련 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
 - 공예 단체간 문화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
 - 관광공예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등
- 위탁조건
 - 수탁재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(전기·전화·상수도·공공요금 등)을 수탁자가 부담
 - 수익시설(판매장 등)에 대하여 매년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납부

□ 향후일정

- 공예전시체험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: '22. 11월
- 수탁자 모집 공고 · 수탁자 선정 심의 및 위탁계약 체결 : '22. 12월
- 공예전시체험관 위탁운영 : '23. 1월

□ 기대효과

- 공예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,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에게 민간위탁 함으로써,
- 관내에서 생산되는 실용적이고 예술적 가치가 높은 공예품의 전시홍보 및 판매를 활성화하고, 지역관광소득 증대를 통한 공예산업 육성에 기여.
- 수탁기관의 기술과 전문 인력 확보로 지역 주민에게 공예 분야 교육·체험 기회 확대.

□ 관련자료

- 관련법령 1부. 끝.

관계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-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- 제27조(행정재산의 관리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(이하 “관리위탁”이라 한다)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. 다만, 계약의 목적·성질·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.

-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.
-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(轉貸)할 수 있다.
-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,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.
-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

제4조(대상사무)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
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
제5조(위탁조건 및 기간) 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한 그 필요성·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춰 민간위탁할 수 있다.

1. 충분조건: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
2. 필요조건: 제7조에 따른 의회의 동의

□ 평창군 공예전시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

제5조(위탁운영) ①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“라 한다)는 효율적인 공예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예품 생산 법인이나 단체,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